

# 2016년 장애인 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일 8시간 근무(월~금요일 9시~18시까지, 주 5일 근무)

\*\*\*\*\*복지 및 일반 행정 지원(보조인력 지원 없이 업무 가능자)

\*\*\*\*\*구청, 동 주민센터 및 복지기관 등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: 행정도우미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※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

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
(단,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(근로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)

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(단,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)

- 소득이 없는 사업자 : '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' 제출

- 연소득이 4,056,000원 이하인 사업자 : '소득금액 증명원' 제출

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
(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(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)

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
(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)

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

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\*\*\*\*\*

### 주지 동 주민센터

연번	기관별	주 소	안내전화	비고
1	삼양동	삼양로 268(미아동)	901-2218	
2	미아동	솔매로49길 14, 1층 (미아동,미아동복합청사)	901-2175	
3	송중동	오패산길 162(미아동)	901-2163	
4	송천동	솔샘로 284(미아동)	901-2242	
5	삼각산동	삼양로19길 102(미아동)	901-2054	
6	번제1동	덕릉로41길 74(번동)	901-2267	
7	번제2동	한천로 897(번동)	901-2274	
8	번제3동	한천로105길 21(번동)	901-2286	
9	수유제1동	삼양로 299(수유동)	901-2298	
10	수유제2동	한천로 1117(수유동)	901-2305	
11	수유제3동	노해로 36(수유동)	901-2171	
12	우이동	삼양로139길 49(수유동)	901-2323	
13	인수동	인수봉로 255(수유동)	901-2334	

\*\*\*\*\*

\* \*\*\*\*\*

\* 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」

-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·중·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공제 적용
- 대학생(야간대생 포함,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)은 30만 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공제 제공
-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% 공제 적용

\* \*\*\*\*\*

- \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 
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
- \*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(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)
 

①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.
- \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\*

\*\*\*\*\*

\*\*\*\*

\*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'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'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 
 \*\*\*\*\*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: (노동부 차별개선과-2304)

\* \*\*\*\*\*(<http://www.gangbuk.go.kr>) '고시공고'에서

\*\*\*\*\*

\* \*\*\*\*\*

\* \*\*\*\*\*

2015\*\*\*\*\*

**서울특별\*\*\*\*\***